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383

발의년월일: 2020년 3월 27일

발 의 자 : 이석주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·박상구·봉양순

신정호·우형찬·임만균 정지권·최기찬·추승우

홍성룡·황인구 의원(11명)

1. 개정이유

○ 현행 건축법은 상업지역 등에서의 맞벽건축을 허용하면서, 맞벽건축 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적용되는 대지안의 공지규정과 일조 등의 확 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민법상 적용되는 대지경계선으로 부 터 50cm 이격거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.

○ 이와 관련하여 맞벽 대상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운데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에서는 이를 "5층 이하"로 규정함에 따라, 고층·고밀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의 특성상 이 지역에 건립되는 맞벽건축물의 경우 상층부에 단이 생겨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비효율적 토지이용을 야기하는 바 상업지역에 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○ 상업지역에 한하여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을 적 용하지 않도록 함.(안 제32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3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 다만,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맞벽건축 기준)	제32조(맞벽건축 기준)
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	(현행과 같음)
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	
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	
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	
따른다.	
1. 건축물의 용도 : 영 별표 1 제2	1.~ 2. (현행과 같음)
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	
2. 대지 상호 간에 맞벽건축하는	
건축물의 총 수는 2동 이하로 할	
것. 다만,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	
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	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	
피난·방화 등에 안전에 이상이 없	
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	
용할 수 있다.	
3. 건축물의 층수 : 맞벽되는 부분	3
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<u>(단서</u>	<u>.</u> 다만,
<u>신설〉</u>	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	<u>니하다.</u>